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한국조선해양주식회사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상법 제393조의2 및 현대중공업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정관 제42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기준)

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의 취지와 상관례를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3조(규정의 제정 및 개정)

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2장 위원회

제4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(이하 “내부거래”)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.
- ② 위원회는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.
- ③ 위원회는 내부거래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구성과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위원

의 자격도 당연 상실한다.

-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정한 결의방법에 따라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내부거래책임자)

- ① 내부거래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임면한다.
- ② 내부거래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.
 - 1. 본 규정의 준수여부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보고
 - 2.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
 - 3. 기타 위원회가 내부거래책임자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내부거래책임자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가 내부거래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제3장 회 의

제8조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9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0조(소집통지)

위원장 또는 위원회 소집권자는 회일로 정한 일자의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문서,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1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기준(이하 “거래상대방 선정 기준”)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- ② 내부거래책임자의 임면
- ③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13조(관계인 의견청취 등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 등)

-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처리 경과, 그 결과, 안건에 찬성한 자와 반대한 자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